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9월 9일, 이달회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6년 9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6. 9. 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6. 9. 1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6. 9. 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달회의원)

현행법은 외국인 가입자등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기여금과 사용자가 부담한 부담금을 합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고 있고,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연금보험료의 추

후 납부에 관하여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가입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는 외국인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고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하여 이를 반납하고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함으로써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주요국은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본인 기여분에 한정하여 지급하거나 반환일시금의 반납이나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따라 가입기간을 산입하여 주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우리와 차이가 있음.

이에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해서는 그 본국 법이 정하는 바에 상응하여 반환일시금의 산정과 반납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되 외국인의 본국 법이 이에 상응하는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있거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추후 납부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상호주의에 따른 제도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개정안은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제한하되, 상호주의가 적용되거나 연금보험료를 정상 납부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에 대하여는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현행법 제12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반환일시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일시금의 산정방법이나 반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 외국인에 대한 반환일시금 산정방법 및 반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소득의 불안정성이 비교적 높은 취약계층이 자신의 가입이력을 사후적으로 보충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성을 제고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제도 등이 외국인 가입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모든 외국인 가입자들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가 제한될 경우에는 외국인의 본국 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이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제도에 상응하는 가입이력 보충 지원제도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소지가 있으므로, 외국의 공적연금제도에 관한 법령을 적용받는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성에 미칠 영향과 국제적 상호주의 원칙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한편, 안 제126조제6항제2호는 연금보험료를 정상 납부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를 제3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려는 것인데, 현행법 제92조에 따르면 추납보험료 추후 납부를 신청한 후 추납보험료를 실제 납부하여야만 그 기간이 가입기간에 산입되므로, 안 제126조제6항제2호 중 “제92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한 기간은 제외한다”는 ‘제92조에 따라 납부한 추납보험료에 상응하는 기간은 제외한다’로 수정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안 제126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실납부자에 대한 형평성 저해 논란을 비롯하여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한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제도의 적용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최근 급속히 확산한 측면과 함께, 개정안에 따라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외국인 가입자등이 이 법 공포일로부터 시행일까지의 기간 내에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질 소지와 법적 안정성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백종헌)

-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제도와 부양가족연금액에 대한 외국인 가입자 등의 적용관계를 개편하여야 할 필요성, 상호주의와 그 밖의 예외 사유를 규정하여야 할 필요성 등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외국인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제도와 부양가족연금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상호주의와 체류자격, 국내 거주 기간 및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 등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
예외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각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
안을 마련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